

改正된 點檢報告書 樣式을 使用함에 있어서

改正 安全點檢 報告書樣式이 相當한 期間의 檢討와 試驗適用의 過程을 거친후 7月 1日부터 施行中에 있다.

이번의 樣式改正은 協會가 安全點檢을 實施한 以來 세 번째의 全面改正이다. 지금까지의 點檢報告書樣式은 주로 關係法規를 爲主로 한 點檢項目으로 構成되어 있었고, 그 項目에 따라서 法規規定事項이 記述되고 또한 安全點檢 結果는 法規 中心의 內容이 建物所有主에게 通報되어 왔다.

이러한 過程이 數年間 되풀이 되어 오면서 漸次 點檢內容은 硬直되어 왔으며 個個 消防設施의 施設上의 缺陷指適에 偏重되어 施設의 維持管理問題나 發火危險의 點檢에는 그렇게 刮目할 만한 發展이 없었다고 보아진다.

'82年度에 發生한 特殊建物の 權災分析 結果에 의하면 權災時 防災設施의 利用率은 延燒防止施設 62.8%, 警報施設 15.0%, 消火栓 44.2% 등으로서 防災施設은 設置되어 있으나 管理上의 缺陷으로 인하여 많은 施設이 使用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의 是正이 切實히 要求되고 있으며, 本誌 第23號의 〈時論〉에서도 大邱 "K 호텔"의 火災事例를 들어 防災設施의 管理面에 대한 重要性을 強調한 바가 있다.

이번 樣式改正趣旨는 이런 點을 勘案하여 反復의인 防災施設 內譯把握을 簡素化함으로써 그 餘力을 施設의 管理面이나 發火危險點檢에 기울이도록 하였으며 또한 關係法規規定事項뿐만 아니라 建物の 特性에 따른 點檢事項이 報告書에 많이 反映되도록 配慮하였다.

그러나 點檢報告書樣式的 點檢項目이 어느 程度까지는 點檢方向의 指標가 되기는 하나 單純히 樣式自體만으로서는 바라는 點檢의 目標가 達成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樣式的 構成보다도 點檢者의 姿勢가 더욱 重要하다고 할 수 있으며 樣式的 構成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點檢者가 但只 義務的으로만 記載欄을 채운다면 좋은 報告書가 될 수 없을 것이며 비록 樣式構成이 不備하더라도 點檢者의 誠意와 努力 如何에 따라서는 훌륭한 報告書가 作成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改正報告書에서는 建物の 規模·用途나 防火管理狀態等の 建物特性에 따른 綜合評價를 作成, 所有主에게 通報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綜合評價가 效果의으로 作成되기 위하여는 點檢者는 建築, 化工, 電氣, 機械分野의 어느 一個 所管分野에 局限됨이 없이 建物の 防災上 問題點과 對策의 核心을 綜合的으로 檢討 提示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豊富한 防災知識과 經驗이 쌓여 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平素 防災技術涵養에 不斷한 努力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改正樣式的 構成이 從前과는 달리 變化가 많아 作成에 不便한 점이 많고 施行에 多少 問題點이 發生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앞에서 言及한 趣旨를 잘 理解하여 樣式的 改善點을 繼續 導出, 補完해 나가야 할 것이며, 改正樣式 使用을 契機로 하여 特殊建物 所有主에게 建物防火管理의 問題點과 對策을 보다 깊이있고 仔細하게, 또 親切하게 提供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이다.